



KS인증신청 안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개요

구 분	내 용
인증기관	<u>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u> 2015.11.30. 제1호 KS인증기관 지정 (B, C분야) 2016.07.28 KS 인증분야 확대 지정 (A, D, F, G, L, M, P, T 8개 분야)
인증심사	① 1개 품목 1일 ② 2개 또는 3개 품목 2일 ③ 4품목 이상 3일
정기심사	- 외국소재 : 1개 품목 2일 기준 - 신규 또는 현저하게 곤란할 경우 1일 추가 ④ 인증심사(신규)는 제품심사 실시 ⑤ 정기심사는 제품심사 폐지

1. KS인증 취득 및 심사를 위한 준비

1.1 KS 표준 및 심사기준 검토

1) KS 표준 검토

- ① KS 표준번호/표준명, 적용범위, 재료 및 구조, 종류, 품질(성능), 치수, 시험·검사 방법 등의 적정성 및 적합성 확인
- ② KS 표시 지정품목 여부 확인
- ③ KS 인증심사기준 검토 및 개정된 최신판 여부 확인

2) 일반심사기준(6가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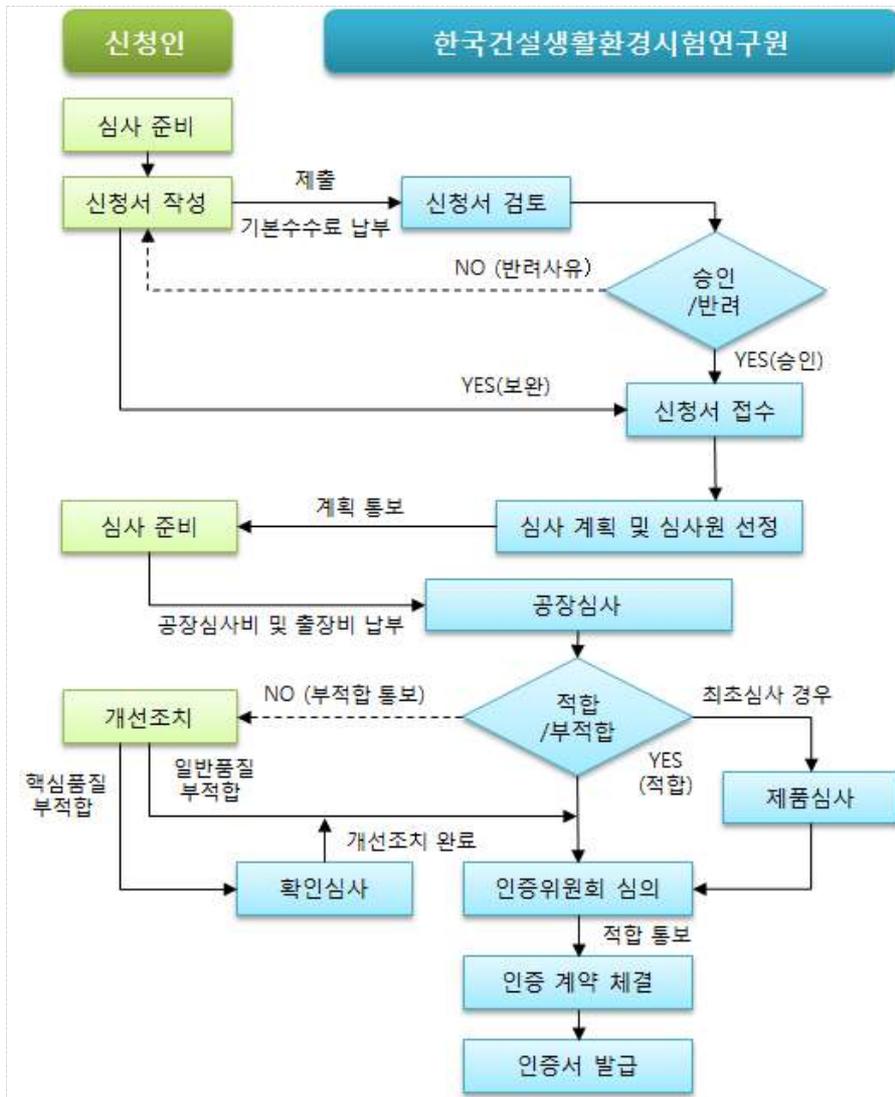
- ① 품질경영관리

-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 사내표준, 관리규정 및 품질경영계획을 KS 기반으로 심사기준 수준 이상에 적합하도록 수립 및 입안
 - ㉡ 품질경영부서 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독립적 운영
 - ㉢ 사내표준화와 품질개선활동에 대한 자체점검(1년 주기) 및 결과 반영
- ② 자재관리
 - ㉠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주요 자재명 및 자재별 검사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 생산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규정
- ③ 공정·제조설비 관리
 - ㉠ 주요 공정명 및 공정별 검사 또는 관리항목,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
 - ㉡ 공정관리자가 사내표준에 따라 KS 수준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도록 KS에 규정된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결과를 기록·활용
 - ㉢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 제조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작업 실시
- ④ 제품 관리
 - ㉠ 제품 설계 및 개발 절차 계획
 - ㉡ 제품 품질검사 항목 제품품질기준의 KS표준 기준 이상 규정
 - ㉢ 제품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보증될 수 있는 검사 방법의 활용
 - ㉣ 사내표준에 따른 검사 실시, 기록, 공정개선 및 품질 향상에 활용
- ⑤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 ㉠ KS 표준과 심사기준에서 정한 시험검사설비를 포함하여 보유 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
 - ㉡ 교정실시, 외부설비 등 시험검사설비의 사용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록
- ⑥ 소비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 ㉠ 소비자 불만의 원인분석,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제품사용정보제공
 - ㉡ 제품 요구사항 달성을 위한 청정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5S활동, 안전 및 복지
 - ㉢ 교육훈련 실시 및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1.2 관리 실적 확보

- ①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정기 심사의 경우 최근 1년간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에 대해 실시
- ② KS표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 생산할 수 있는 품질안정, 시스템 기술수준 유지 여부판단을 위해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 운영에 관한 관리 실적 확보
(자재 규모, 인력, 설비, 생산, 검사, 판매 등을 포함한 경영 전반적인 관리 실적 포함)

2. KS인증 처리절차



※ KS인증 심사 신청은 방문, FAX, 우편 이용(한시적) 추후 온라인 시스템 개설 예정.

3. 제출 서류 및 수수료

3.1 신청서 및 첨부 제출서류

- 1) 제품인증 신청서(또는 정기심사 신청서, 지위승계신고서)
- 2) 대표자 동의서
- 3) 주요 자재관리목록
- 4) 제조·가공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
 -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업체 현황 및 외주공정비율 포함
 - 외부 시험·검사 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별 사용여부 및 외부 설비업체 현황 포함
- 5) (해당되는 경우) KS Q ISO 9001 인증서 사본 및 내부심사보고서, 경영검토보고서, 부적합개선보고서 등 첨부
- 6)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2 심사 시 준비서류

- 1) 회사 현황 설명서(심사위원 각 2부)
 - 회사연혁, 회사개요, 사내표준목록 / QC공정도,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QC 담당자 자격증 및 근무 증빙서류
 - QM 추진현황(QM행사, 내부심사, 교육이수현황, 불만처리, 청정활동 및 안전관리 등)
- 2) 공장 일반현황, 제품재고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 제조 및 시험검사설비 현황
- 3) 회사표준 / 해당 KS표준 및 심사기준(최신개정판 확인)

3.3 심사 수수료

- 1) 기본수수료 : 1품목 기준 50만원 (1품목 추가시마다 25만원 추가)
※ 계좌번호 : 100-013-967823 (신한은행,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 인증심사원 출장비
- 3) 공장심사비
- 4) 제품시험 수수료
- 5) 인증서 재발급 : 1회 신청 시마다 3만원

4. 인증기관 및 인증요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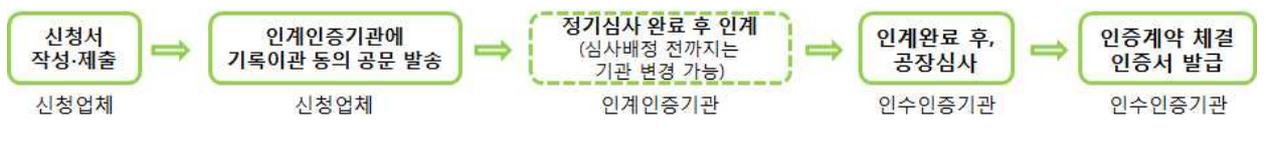
4.1 인증기관 변경

4.1.1 변경절차 - 정기심사 절차 준용

- ① 제품인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 인계인증기관이 인수인증기관에 기록을 이관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 ③ 정기심사 등 진행인 경우, 정기심사 완료 후 인계
 - 심사배정 전까지는 인증기관변경 가능
- ④ 인계 완료 후, 우리원(인수인증기관)은 공장심사 수행
- ⑤ 제품의 품질 확인 필요 시, 제품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 추가 실시 요청
- ⑥ 인수인증기관과 인증계약 체결 후, 인증서 발급
- ⑦ 인증 받은 자는 기존 인증서를 인계인증기관에 반환

4.1.2 준비서류

- ① 3.1항의 제출서류와 동일
- ② 기존 KS 인증서 사본 및 4.1.1 ②의 공문 사본 첨부



4.2 지위승계 (양도양수, 합병, 법인전환, 대표자 변경, 업체명 변경)

4.2.1 변경절차

- ①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
- ② 인증기관은 존속이나 합병 후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 ③ 인증기관은 가능한 서류 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
- ④ KS 인증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시, 접수일자로부터 3일 이내 인증서 재발급

4.2.2 준비서류

- ①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공장등록증 사본(500m² 이상 필수)
-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⑤ KS인증서 원본
- ⑥ 지위승계신고서
- ⑦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양수한 경우)
- ⑧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 ⑨ 합병계약서(합병한 경우)

4.3 공장(사업장) 이전

4.3.1 변경절차

- ① 공장(사업장) 이전을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
- ② 공장(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유지 결정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
- ③ KS 인증제품 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시,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인증서 재발급

4.3.2 준비서류

- ①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공장등록증 사본(500m² 이상 필수)
-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⑤ KS인증서 원본
- ⑥ (변동 시)변동 내역서(제조, 검사설비 보유현황)

5. 문의 및 상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KS인증센터 (FAX : 02-3415 -8777)	안병권 센터장	02-3415-8859	bka0048@kcl.re.kr
	석호중 책임연구원	02-3415-8763	rockstone@kcl.re.kr
	신현환 선임연구원	02-3415-8870	s00331@kcl.re.kr
	박미정 주임연구원	02-3415-8884	pmj079@kcl.re.kr
	지승용 주임연구원	02-3415-8811	yong1067@kcl.re.kr